

[별표 2]

심사일수 산정기준	
산출식(단위 : MD)	비 고
49인 이하 = 세부품명수+현장수 50인~299인 = 1+세부품명수+현장수 300인 이상 = 2+세부품명수+현장수	- 세부품명수 1, 현장수 1인 경우 * 49인 이하, 1+1 = 2(MD) * 50인 ~ 299인, 1+1+1 = 3(MD) * 300인 이상, 2+1+1 = 4(MD) - 세부품명수 2, 현장수 2인 경우 * 49인 이하, 2+2 = 4(MD) * 50인 ~ 299인, 1+2+2 = 5(MD) * 300인 이상, 2+2+2 = 6(MD)

[별표 2] 심사원수 및 심사일수 산정기준표 ※(주)

1. 신청 세부품명수가 2개 이상인 경우, MD산정은 동일한 생산라인을 이용할 경우,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다.
 - 이 경우 '신청 세부품명수' 3개를 '심사원수 및 심사일수 산정기준표'의 품명수 1로 환산 적용한다.
 - * 1~3품명 → 세부품명수 1로, 4~6품명 → 세부품명수 2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2. 심사대상 현장이 2개 이상인 경우 MD산정은 인접(예, 같은 시·군·구 내)하여 위치하고 동일세부품명을 생산할 경우 심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축소 조정할 수 있다.
3. 동일사업장의 지정세부품명 추가 신청 시 6개월 이내인 경우는 공통부분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
 - 이 경우 MD산정은 위의 표 기준 1/2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4. 유지관리 현장심사는 세부품명 수, 현장 수에 따라 증감하나 위의 표 기준으로 1/2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5. 품질개선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경우, 이를 1MD로 추가 산정한다.
6. 여비, 출장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(출장비 지급 기준)에 준한다.
7. 이 기준은 MD산출의 상한이며, 제13조의 현장심사계획서(일정)에 의하여 확정한다.